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65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650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1160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균

변론 종결 2022. 7. 6.

판결 선고 2022. 8. 1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1160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Z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40,305,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분명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5. 9.부터 두 달 이내인 2020. 7. 13.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C가 2020. 7. 13.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순차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감정평가액 합계 1,432,969,9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28,864,000원인 공장기계 및 시가 12,000,000원인 진주시 G 전 1547㎡가 있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1,828,957,36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C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C 또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와 거래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2020. 5. 7. 5,401,704원, 2020. 5. 19. 3,243,240원, 2020. 6. 1.

2,092,288원(=737,748원+801,900원+552,640원), 2020. 6. 17. 453,024원 합계

11,190,256원 상당의 특수강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미수대금채권이 129,831,979원이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와 비슷한 수준인 150,00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피고가 C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였다거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가 담보를 제공할 테니 공급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2020. 6. 17. 453,024원을 발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고와의 거래는 없는 점, ④ C는 피고에게 2020. 5. 7. 500만 원, 2020. 5. 19. 300만 원, 2020. 6. 17. 400만 원 합계 12,0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1,190,256원 보다 809,744원(=12,000,000원-11,190,256원)을 초과 지급한 점, ⑤ C가 경영하던 D회사 사업장 직원들 중 상당수가 2020. 6. 30. 퇴사한 점, ⑥ 피고는 2020. 7. 10. C에게 미수금 129,022,235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미수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미수금인 129,831,979원과의 차액이 809,744원(=129,831,979원-129,022,235원)으로, C가 앞서 초과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점, ⑦ 결국 피고는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결제한 금액을 같은 기간 공급받은 특수강 대금에 우선 변제충당하였고, 남은 809,744원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변제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기존 미수금 채권을 담보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지, 피고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Z)가 진행되어 피고가 2021. 12. 14. 근저당권자로서 140,305,494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2020.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101626)을 받았고, 2021. 11. 22. 피고의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697)을 받은 사실, 이에 위 배당금이 전액 공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C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40,305,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일예

판사서호원

판사이은명

별지